

일반사무 위탁계약 변경 계약서

(주)판교2밸리대토개발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삼정케이피엠지 에이에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일반사무 위탁계약에 관하여 [2020]년 [01]월 [30]일 체결한 일반사무 위탁계약 (이하 ‘원 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계약(이하 ‘본 계약서’)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변경내용)

‘원 계약서’ 상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계약 | 변경계약 |
|---|---|
| 제8조(보수) ② 제1항의 보수는 연간 [사천만원](₩40,000,000)(VAT 별도)으로 정하고, 매 분기마다 [일천만원](₩10,000,000)(VAT 별도)을 분기말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다만, 당해 “을”의 수탁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첫번째 업무보수는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득한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며, 해당 보수의 지급은 사업의 PF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 제8조(보수) ② 제1항의 보수는 연간 [삼천오백만원](₩35,000,000)(VAT 별도)으로 정하고, 매 분기마다 [팔백칠십오만원](₩8,750,000)(VAT 별도)을 분기말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다만, 당해 “을”의 수탁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첫번째 업무보수는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득한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며, 해당 보수의 지급은 사업의 PF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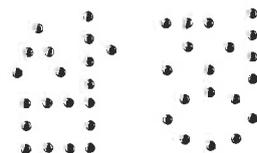
제2조(적용 시점)

본 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은 계약 체결일이 속한 분기에 대한 보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서 변경된 사항 이외의 모든 계약내용은 ‘원 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5]월 []일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5층(여의도동, SK증권 빌딩)
주식회사 판교2밸리대토개발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임 성 열 (인)



“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28
삼성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성 래 (인)

